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장의 '가입자 유의사항'은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요약한 것이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자의 권리

◇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설명 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개인계약의 경우 **청약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손 의료비 담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상품설명서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 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①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이 보험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과 관련한 계약자 권리, 의무, 보험금 지급사항 등 기타 중요내용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업, 건강상태 등을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주셔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인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3.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3-1.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 1 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청약 철회시 지정주소 안내 참조)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http://www.chartis.co.kr>) 에서도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청약철회의 효력이 있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전화 :)
- 가까운 영업점 위치: (전화 :)

3-2. 계약취소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실손 의료비 담보의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3.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4.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5. 주소변경 통지

회사에서 발송되는 모든 안내장은 계약자가 **알려준 최종의 주소와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발송되며,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3-6.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

구분	담보명	지급사유
기본담보	상해사망, 후유장해	여행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선택담보	상해/질병의료비 (해외)	여행중에 상해나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공인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약을 첨부한 계약에 대하여는 면책금액을 공제후 보험금 지급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상해의료비 (국내입원)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 일 평균금액 10 만원을 한도로 하며, 1 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상해의료비 (국내외래)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 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의원 1 만원, 병원 1 만 5 천원, 종합전문병원 2 만원
	상해의료비 (국내처방조제)	여행중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 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8 천원
	질병의료비 (국내입원)	여행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 일 평균금액 10 만원을 한도로 하며, 1 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의료비 (국내외래)	여행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 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의원 1 만원, 병원 1 만 5 천원, 종합전문병원 2 만원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의료비 (국내처방조제)	여행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 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8 천원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사망	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만료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및 약관에서 정한 장애상태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여행중 타인의 신체손해,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증권상 보상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초과분)
특별비용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탑승한 항공기·선박이 행방불명·조난된 경우 등의 수색구조비용,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숙박비(2명분,14일 한도),유해이송비용(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 운임,수행의사,간호사 호송비) 등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항공기납치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의 매일 70,000원씩 지급(단,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 한도)
카드사용액 보상(해외 여행중 상해사망)	여행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해 1년 이내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카드사용금액의 결제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여권분실위로금	여행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상

※ 실제로 가입한 담보 사항 및 가입금액은 증권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증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질병 의료비의 국내 외래/처방의 경우 보험가입기간(1년미만/이상)에 따라 보상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과 관련한 계약자 권리, 의무, 보험금 지급사항 등 기타 중요내용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직업, 건강상태 등은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주셔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및 계약자의 고의, 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 피보험자의 사형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등 이와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의 사고
 - 그 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양식업자,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 의료실비 담보의 경우, 아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 ~ 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O00 ~ O99)
 - 선천성 뇌질환(Q00 ~ Q04)

- 비만(E66)
- 비뇨기계 장애(N39, R32)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 ~ K62)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해외 의료기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is)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실손 의료 보험 다수 가입시 보험금(의료비) 지급 의료비 특별약관은 같은 의료실비를 보상하는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이 경우 비례보상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

의료비의 실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말합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보상액} = \text{실제손해액}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text{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

※ 비례 보상 지급 예시

- 계약자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 중 실제손해액이 100만원인 경우

구 분	보험가입금액	보상책임액(산출보험금)	비례보상액(실지급보험금)	비례보상 합계액
A계약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B계약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 **실제손해액** : 계약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정한 지급보험금 계산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보상책임액(산출보험금)** : 실제 치료비중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

※ **비례보상액(실지급보험금)** : 각 회사별로 비례보상을 감안하여 비례보상액 산출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

※ 위 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실제 보상내용 및 지급 보험금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대책임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 상기에서 설명 드린 조항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특별히 유의하실 항목만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반드시 약관을 통해 설명받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책임관련 담보 개별 약관 별 유의사항

- **배상책임관련 담보에서**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상기에서 설명 드린 조항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특별히 유의하실 항목만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반드시 약관을 통해 설명 받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지역 및 테러리스트에 관한 유의사항

- 회사는 **아래의 특수지역 및 테러리스트와** 관련한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리베리아 또는 수단**에서의 여행, 이들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 또는 이들 국가를 경유하는 여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상해, 손해 또는 법적 책임
 - **테러리스트, 테러조직의 조직원과 마약밀매상, 핵무기, 생화학무기의 공급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모든 손실, 상해, 손해 또는 법적 책임

6.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사항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7. 사업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8.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청약서 상에 **피보험자 동의를 반드시 날인하셔야 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취득한 개인 신용정보는 계약자께서 청약서에 동의한 이외의 사항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hartis.co.kr>) 우리회사 본사 (2260-6800)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상품설명서

9. 보험계약개요

보험회사	아메리칸 홀 어슈어런스 캠페니 한국지사		
모집자	_____ 지정 _____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인 _____ (전화번호 : _____)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201 부터 201 까지		
보험계약관계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보험료	원 (납입방법 : 일시납)		

* 청약 철회시 지정 주소 안내

지점	우편번호	주 소	대표전화번호
센트럴	(110-764)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9 층	(02) 2260-4300
강남	(135-8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4-9 덕수 빌딩 4/6 층	(02) 3440-6800
부산	(601-838)	부산시 동구 초량 3 동 1199-9 교원아카데미 빌딩 7 층	(051) 604-0200
대구	(706-728)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 번지 MBC 빌딩 16 층	(053) 602-0200
대전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403 호	(042) 605-0200
인천	(405-72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092-55 건설회관 4 층	(032) 451-0300
광주	(501-87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 1 동 700-5 전남일보빌딩 3 층	(062) 514-6331
수원	(442-83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0 상호파크타워빌딩 4 층	(031) 231-3300
전주	(561-71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은행빌딩 15 층	(063) 250-0800
경남	(641-847)	경남 창원시 팔용동 33-5 서주빌딩 4 층	(055) 240-6331
울산	(680-805)	울산시 남구 달동 1325 - 12 소니빌딩 2 층	(052) 270-4700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관 등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 >

◇ 본 '가입자유의사항'은 보험가입자가 동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금관련 유의사항 등'을 선별·요약한 것이므로 동 내용을 설명 받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모집인 _____은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10 보험모집인 (인)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가입자유의사항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0 보험계약자 (인)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 체결전에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가? 네() 아니요()
- 실손의료비 사전조회를 통하여 조회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을 가입할 경우 각 계약에서 비례분담 한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네() 아니요()

상품번호 : AHA 상품관리 제10-TA029 호
 2010.06.01



고객보관용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상품설명서

9. 보험계약개요

보험회사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캠페니 한국지사		
모집자	_____ 지정 _____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인 _____ (전화번호 : _____)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201 부터 201 까지		
보험계약관계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보험료	원 (납입방법 : 일시납)		

* 청약 철회시 지정 주소 안내

지점	우편번호	주 소	대표전화번호
센트럴	(110-764)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9 층	(02) 2260-4300
강남	(135-8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4-9 덕수 빌딩 4/6 층	(02) 3440-6800
부산	(601-838)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99-9 교원아카데미 빌딩 7 층	(051) 604-0200
대구	(706-728)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MBC 빌딩 16 층	(053) 602-0200
대전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403 호	(042) 605-0200
인천	(405-72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092-55 건설회관 4 층	(032) 451-0300
광주	(501-87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 700-5 전남일보빌딩 3 층	(062) 514-6331
수원	(442-83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0 상호파크타워빌딩 4 층	(031) 231-3300
전주	(561-71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은행빌딩 15 층	(063) 250-0800
경남	(641-847)	경남 창원시 팔용동 33-5 서주빌딩 4 층	(055) 240-6331
울산	(680-805)	울산시 남구 달동 1325 - 12 소니빌딩 2 층	(052) 270-4700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관 등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 >

◇ 본 '가입자유의사항'은 보험가입자가 동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관련 유의사항 등'을 선별.요약**한 것이므로 동 내용을 **설명 받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모집인 _____은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10 보험모집인 (인)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가입자유의사항**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0 보험계약자 (인)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 체결전에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 실손의료비 사전조회를 통하여 조회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을 가입할 경우 각 계약에서 비례분담 한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네() 아니요()

상품번호 : AHA 상품관리 제10-TA029 호
2010.06.01

